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56호 2022. 8. 12(금)

조 례

- 남원시 자치법규 공포 목록(조례2건)----- 1
- 남원시 조례 제1816호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
- 남원시 조례 제1817호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2-1668호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6
- 남원시 공고 제2022-1669호 남원시 읍·면·동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4
- 남원시 공고 제2022-1673호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의견청취 열람 공고-----45
- 남원시 공고 제2022-1689호 남원시 도시관리계획(김주열 열사 추모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47
- 남원시 공고 제2022-1690호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9
- 남원시 공고 제2022-1701호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6
- 남원시 공고 제2022-1709호 도로지정공고----- 65
- 남원시 공고 제2022-1712호 공시송달공고----- 66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자치법규 공포 목록

- 총 2건 (조례 2건) -

□ 조례 : 2건

공포 번호	규칙명	제·개정 내용	소관 부서
1816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가. 상위법령에 맞게 연령기준 반영 (안 제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7세~12세, 청소년: 13세~19세, 어른: 20세~64세 <p>나. 휴관일 삭제 (안 제6조제1항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1일, 설날, 추석 → 삭제 <p>다. 상위법령 기준 범위 내에서 관람료 변경 (별표 1)</p> <p>라. 바리스타 로봇 체험 요금 신설 (별표 2)</p>	관광시설 사업소
1817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p>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과 유사·중복되는 규정 삭제(7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현행 제4조 삭제) -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현행 제5조 삭제)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현행 제6조 삭제) - 가족 채용 제한(현행 제7조 삭제) - 수의계약 체결 제한(현행 제7조의2 삭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현행 제14조 삭제)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현행 제22조 삭제) <p>나.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별지 서식 삭제</p>	행정 지원과

공포 번호	규칙명	제·개정 내용	소관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가(轉嫁)’로 한자 병행 표기(안 제16조제2호) - 제7조 ‘가족채용제한’ 규정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산하기관’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관련 조항의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함 (안 제16조제3호) -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규정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서면’ 용어 설명 규정을 다른 관련 조항으로 이동 (안 제19조제2항)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서식 삭제 (별지 제1호~제4호 및 제12호) <p>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부합 하도록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기간 중에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안 별표1)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8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816 호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6세”를 “7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8세”를 “19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19세”를 “20세”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 5. 4>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관람료(제7조 관련)

구 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비 고
개 인	4,000원	2,000원	2,000원	1시간 기본 프로그램 운영
단 체	3,000원	1,500원	1,500원	
할인(연계)	2,800원	1,200원	1,200원	

※ 연계 할인권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2]

남원항공우주전문대 프로그램 요금표 (제7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어 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단 체		
1박 2일 가족캠프	12,000원	14,000원	11,000원	해당없음		
1박 2일 청소년캠프	12,000원	14,000원	11,000원	해당없음		
심화프로그램	8,000원	6,000원	4,000원	어 른	7,000원	2시간 기준
				청소년· 군인	5,000원	
				어린이	3,000원	
양부일구 만들기 체험(해시계)	5,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T-50 만들기 체험 (종이비행기)	3,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자이로 가상현실체험	3,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패러글라이딩 가상현실체험	3,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플라잉젯 가상현실체험	3,000원				선 택 형 프로그램	
연간 회원제	50,000원					
바리스타 로봇	아메리카노	어린이 음료		아이스크림		선 택 형 프로그램
	2,000원	1,000원		1,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u>6세</u>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p> <p>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u>18세</u>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p> <p>4. (생략)</p> <p>5. “어른”이란 <u>19세</u>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6. ~ 8. (생략)</p>	<p>제3조(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7세</u> ----- -----.</p> <p>3. ----- <u>19세</u> ----- ----- --.</p> <p>4. (현행과 같음)</p> <p>5. ----- <u>20세</u> ----- -----.</p> <p>6. ~ 8. (현행과 같음)</p>
<p>제6조(휴관) 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1월1일, 설날, 추석</u></p> <p>2.·3.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휴관) ① ----- -----.</p> <p>1. <삭제></p> <p>2.·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8월 12일

남원시 조례 제 1817 호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남원시 또는 남원시의 산하기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남원시 또는 남원시의 산하기관”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남원시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남원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남원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9조제2항 본문 중 “따라”를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 제14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5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

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9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①</u> <u>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u> <u>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u> <u>“안전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u> <u>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u> <u>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u> <u>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u> <u>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u> <u>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u> <u>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u> <u>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u> <u>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u> <u>경우</u> 2. <u>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u> <u>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u> <u>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3. <u>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u> <u>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u> <u>자인 경우</u> 4. <u>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u> <u>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u> <u>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u> <u>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u>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u>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5. <u>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u></p> <p>6. <u>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가. <u>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u></p> <p>나. <u>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u></p> <p>다. <u>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u></p>	

현 행	개 정 안
<p><u>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u></p> <p>7. <u>일천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u></p> <p>8. <u>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u></p> <p>9. <u>최근 2년 이내에 안건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u></p> <p>10. <u>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② <u>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u></p> <p>③ <u>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남원시의회(이하</u></p>	

현행	개정안
<p><u>“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p> <p><u>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u></p> <p><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u></p> <p><u>제5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u></p>	<p><u><삭 제></u></p>

현행	개정안
<p><u>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u> <u>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u> <u>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u> <p><u>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u></p> <p><u>제6조(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u></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u>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p> <p><u>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u></p> <p><u>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u></p> <p><u>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u></p> <p><u>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u></p> <p><u>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p> <p><u>제7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남원시의 집행기관 및 남원시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u></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 <u>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 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는 안 된다.</u></p>	
<p>제7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u>의원은 남원시의 산하기관과 물 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u></p> <p>② <u>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 수관계사업자가 남원시의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u></p>	<p><삭 제></p>
<p>제14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 익의 금지 등) <u>의원은 각종 공 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 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 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u></p>	<p><삭 제></p>
<p>제16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 당 행위의 금지) <u>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u></p>	<p>제16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 당 행위의 금지) ----- -----</p>

현행	개정안
<p>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p> <p>1. (생략)</p> <p>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u>전가</u>하거나 지연하는 행위</p> <p>3. <u>남원시 또는 남원시의 산하 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u>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 <u>전가(轉嫁)</u>-----</p> <p>3.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u>-----</p> <p>-----</p> <p>-----</p> <p>가. <u>남원시의 집행기관</u></p> <p>나.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남원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p> <p>다. 「<u>공직자윤리법</u>」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남원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p>

현행	개정안
<p>4. 그 밖에 직무관련자, <u>남원시 또는 남원시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u></p> <p>제19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p> <p>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 ⑧ (생략)</p> <p>제22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p>	<p>4. ----- 제3호 <u>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u>----- ----- ----- -----</p> <p>제19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으로</u> ----. ----- ----- -----.</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u>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u></p> <p>1. <u>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u></p> <p>2. <u>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u></p> <p>3. <u>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는 또</u> <u>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u></p>	

현 행	개 정 안
<p><u>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u></p> <p><u>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계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p> <p><u>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u></p> <p><u>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u></p>	

현 행	개 정 안
<p><u>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u></p> <p><u>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u></p>	

남원시 공고 제2022 - 1668호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읍·면의 리·반의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1)

- 송동면 경계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신평리, 송기리)

3. 입법예고기간 : 2022. 8. 5. ~ 2022. 8. 25.(20일간)**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069), 팩스(063-620-6704), 이메일(tmdwjd12@korea.kr),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063-620-60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8. .
 제출자 :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과
 장

1. 개정이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읍·면의 리·반의 관할구역 조정 (안 별표 1)
- 송동면 경계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신평리, 송기리)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간: 2022. 8. . . ~ 2022. 8. . .(20일간)
 - 결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백평, 부동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	리명	이장 정수	분리명	반	관 할 구 역
송동	신평	1	백평	1	691~710, 893~896, 900, 901, 934~947
					969~981, 986~1016, 산83-3
				2	256-3, 257-6, 750-2~773, 848~968, 916~921, 156~171, 173~195, 1704, 2090-5
송동	송기	1	부동	1	265~304
				2	28, 98-2, 361~488, 산6-1, 산71, 650~65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남원시 읍·면의 이·반장 정수 및 이·반의 관할구역 총괄표					[별표 1] 남원시 읍·면의 이·반장 정수 및 이·반의 관할구역 총괄표						
읍면	리명	이장정수	분리명	반	관할구역	읍면	리명	이장정수	분리명	반	관할구역
송동	신평	1	백평	1	691~710, 893~896, 900, 901, 934~947	송동	신평	1	백평	1	691~710, 893~896, 900, 901, 934~947
					969~981, 986~1016, 산83-3						969~981, 986~1016, 산83-3
				2	256-3, 257-6, 750-2~773, 848~968, 916~921, <u>156~195</u> , 1704, 2090-5					2	256-3, 257-6, 750-2~773, 848~968, 916~921, <u>156~171</u> , <u>173~195</u> , 1704, 2090-5
송동	송기	1	부동	1	265~304	송동	송기	1	부동	1	265~304
				2	28, 98-2, 361~488, 산 6-1, 산 71					2	28, 98-2, 361~488, 산 6-1, 산 71, <u>650~652</u>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 4. 20.>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 - 1669호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면’ 내에서 ‘리’의 경계 조정 (안 제1조제8항 , 제2조제8항, 안 별표 8)
- 송동면 ‘신평리’ 일부 지역을 ‘송기리’로 편입

3. 입법예고기간 : 2022. 8. 5. ~ 2022. 8. 25.(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행정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3-620-6069), 팩스(063-620-6704), 이메일(tmdwjd12@korea.kr),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행정지원과(☎063-620-60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8.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과장

1. 개정이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면’ 내에서 ‘리’의 경계 조정 (안 제1조제8항 , 제2조제8항, 안 별표 8)
- 송동면 ‘신평리’ 일부 지역을 ‘송기리’로 편입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8 . . ~ 2022. 8.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송동면 송기리 관할구역에 송동면 신평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8과 같다.

제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송동면 신평리 관할구역 중 송동면 송기리에 편입한 송동면 신평리 일부 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8과 같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⑦ (생 략) <u><신 설></u></p>	<p>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⑧ (현행과 같음) <u>⑧ 송동면 송기리 관할구역에 송동면 신평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8과 같다.</u></p>
<p>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⑦ (생 략) <u><신 설></u></p>	<p>제2조(관할구역의 제외) ①~⑧ (현행과 같음) <u>⑧ 송동면 신평리 관할구역 중 송동면 송기리에 편입한 송동면 신평리 일부 지역을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8과 같다.</u></p>

[별표 8]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제1조제8항 및 제2조제8항 관련)

○ **경계조정**

- **송동면 신평리 → 송동면 송기리**

연번	변경전 행정구역				변경후 행정구역				지목	면적(m ²)	비고
	읍면동	법정리	본번	부번	읍면동	법정리	본번	부번			
	계		3필지		계		3필지			1,177.30	
1	송동면	신평리	172	1	송동면	송기리	650	0	대지	508	
2	송동면	신평리	172	3	송동면	송기리	651	0	대지	302	
3	송동면	신평리	172	4	송동면	송기리	652	0	대지	367.30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신청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 간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것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운영 요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

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변경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2.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제5항에 따른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및 대상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련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8항을 준용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경계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따른 협의체의 협의 결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합의를 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각각 알린 경우
2. 위원회가 제7항에 따른 심의 결과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경계변경의 조정과 관련하여 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같은 시·도 안에 있는 관계 시·군 및 자치구 상호 간 경계변경에 관련된 비용 부담,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에 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 결과의 통보 및 조정 결정 사항의 이행은 제16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4.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4.20>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4.20>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남원시 공고 제2022- 1673호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열람 공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1. 열람사항 :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
2. 주요내용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현황 및 문제점
 -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보행자 전용길 조성
 - 연차별 사업추진 및 재원조달 계획
3.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남원시 도시과
 - 열람기간 : 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4.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열람기간 내
 - 제출방법 : 남원시 도시과 직접 서면 제출, 우편 또는 팩스(Fax) 서면 제출
 - 우편 :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3층 (남원시청 도시과)
 - Fax : 도시과(063-620-6716)
5.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 도시과☎ 063-620-6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등의 의견제출서

과업명	남원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열람 공고	
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동지역 및 운봉읍, 인월면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2022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원시 공고 제2022-1689호

남원 도시관리계획(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로 결정 고시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따라 남원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12일

남 원 시 장

1. 남원 도시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504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역사공원	금지면 옹정리 301-3번지 일원	31,760	-	31,760	전라북도고시 제2011-14호 (2011.01.14)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 경”

시설구분	시설면적(㎡)			구성비 (%)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1,760	-	31,760	100.0	465	감)25	440	465	감)25	440	건폐율 1.4%
도 로	2,481	증)204	2,685	8.5	-	-	-	-	-	-	
조경시설	17,726	증)4,602	22,328	70.3	-	-	-	-	-	-	
휴양시설	5,460	감)4,040	1,420	4.6	-	증)75	75	-	증)75	75	건폐율 0.2%
교양시설	2,742	증)1	2,743	8.6	340	-	340	340	-	340	건폐율 1.1%
편익시설	3,251	감)695	2,556	8.0	25	-	25	25	-	25	건폐율 0.1%
기 타	100	감)72	28	0.1	100	감)100	-	100	감)100	-	

3. 공원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시설번호		시설명		시설면적(㎡)			구성비 (%)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1,760	-	31,760	100.0	465	감)25	440	465	감)25	440	건폐율 1.4%
도로	소 계				2,481	증)204	2,685	8.5	-	-	-	-	-	-	
	1-1	-	보행자도로	-	251	감)251	-	-	-	-	-	-	-	-	
	1-2	1-1	산책로	산책로	1,932	감)772	1,160	3.7	-	-	-	-	-	-	3개 노선
	1-3	1-2	가감속차로	도로	298	증)1,227	1,525	4.8	-	-	-	-	-	-	
조경 시설	소 계				17,726	증)4,602	22,328	70.3	-	-	-	-	-	-	
	2-1	2-1	녹 지	녹 지	17,726	증)4,602	22,328	70.3	-	-	-	-	-	-	
휴양 시설	소 계				5,460	감)4,040	1,420	4.5	-	증)75	75	-	증)75	75	건폐율 0.2%
	3-1	3-1	광 장	광 장	5,460	감)4,890	570	1.8	-	-	-	-	-	-	1개소
	-	3-2	-	휴게정자	-	증)335	335	1.1	-	-	-	-	-	-	2개소
	-	3-3	-	다목적그늘막	-	증)515	515	1.6	-	증)75	75	-	증)75	75	신설 1개소
교양 시설	소 계				2,742	증)1	2,743	8.6	340	-	340	340	-	340	건폐율 1.1%
	4-1	4-1	추모각	추모각	325	증)105	430	1.4	130	증)210	340	130	증)210	340	2개소
	4-2	4-2	묘역	묘역	1,852	증)461	2,313	7.3	-	-	-	-	-	-	
	4-3	-	전시및수양관	-	465	감)465	-	-	210	감)210	-	210	감)210	-	
	4-4	-	성덕비	-	100	감)100	-	-	-	-	-	-	-	-	
편의 시설	소 계				3,251	감)695	2,556	8.0	25	-	25	25	-	25	건폐율 0.1%
	5-1	5-1	주차장	주차장	2,421	증)99	2,520	7.9	-	-	-	-	-	-	대형6면 소형48면
	5-2	5-2	화장실	화장실	80	감)44	36	0.1	25	-	25	25	-	25	1개소
	5-3	-	휴게정자	-	190	감)190	-	-	-	-	-	-	-	-	
	5-4	-	그늘시렁	-	560	감)560	-	-	-	-	-	-	-	-	
기타	소 계				100	감)72	28	0.1	100	감)100	-	100	감)100	-	
	6-1	6-1	오수정화조	오수정화조	100	감)72	28	0.1	100	감)100	-	100	감)100	-	1개소

4. 주민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2. 08. 12. ~ 2022. 08. 26.(시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도서 : 붙임생략(공람장소 비치)

6.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도시과 (☎ 063-620-6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 -1690호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9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임시시장 관리자의 업무 위탁 범위를 넓히고, 전통시장 직영매장 신청 자격에서 진입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규제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임시시장 관리자의 업무 위탁 범위 추가 (안 제21조)
- 나. 직영매장 신청 자격 규제 완화 (안 제25조)

3. 입법예고기간 : 2022. 8. 09. ~ 2020. 8. 29. (20일간)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의견 제출할 곳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2), 직접방문 등

5. 기타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063-620-6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임시시장 관리자의 업무 위탁 범위를 넓히고, 전통시장 직영매장 신청 자격에서 진입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규제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임시시장 관리자의 업무 위탁 범위 추가 (안 제21조)
- 나. 직영매장 신청 자격 규제 완화 (안 제2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8. . ~ 9. . (20일간)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기타 시장이 전통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중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며, 농어민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를 “신청할 당시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업인(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이나 청년(「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남원시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21조(임시시장의 관리)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기타 시장이 전통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제25조(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 시장에 직영매장 설치를 <u>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며, 농어민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u></p>	<p>제25조(직영매장 신청 자격) -----</p> <p>-----<u>신청</u></p> <p><u>할 당시 주민등록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업인(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이나 청년(「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p>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1701호

남원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9일

남 원 시 장**남원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결산검사위원회 정수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지급 일비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감사위원회의 정수 변경 (안 제2조)
- 다. 결산검사위원회의 일비 지급 기준 상향 (안 별표)

3. 입법예고기간 : 2022. 8. 9. ~ 2022. 8. 29.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2년 8월 29일 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재정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이메일(psh5023@korea.kr), fax(063-620-6312)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재정과 경리계(☎063-620-66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재 정 과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결산검사위원회 정수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지급 일비를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변경 (안 제1조)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검사위원의 정수 변경 (안 제2조)
- 다.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 기준 상향 (안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8. 9. ~ 2022. 8. 29.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로 한다.

제2조 중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로 한다.

별표 중 일비의 액수 “100,000원”을 “15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0조----- ----- ----- ----- -----.</p> <p>제2조(위원의 정수) ----- 정수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p>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제13조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80%;">액 수</th> </tr> </thead> <tbody> <tr> <td>일 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액 수	일 비	100,000원	<p>[별표]</p> <p style="text-align: center;">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제13조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style="width: 80%;">액 수</th> </tr> </thead> <tbody> <tr> <td>일 비</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00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액 수	일 비	150,000원
구 분	액 수								
일 비	100,000원								
구 분	액 수								
일 비	150,000원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 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전체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월 일</p> <p>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p> <p>남원시장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고 제 2022 - 1709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12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22-3 1	남원시 산내면 중황리 220(답)	김*아, 김*수	2022-건축과- 건축신고-182	87	4	461	220	461	김*아, 김*수

남원시 공고 제2022 - 17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8. 12. ~ 2022. 8. 29.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2.8.11.)	하○옥	남원시 금지면 신월리 101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금지면 신월리 116	주1 목조 단독주택 32㎡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11.

남 원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